

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즉시
대표자	성명(한글)	성명(한자)		
	생년월일			
신청기관	금융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본점소재지			
	자본금	지점수		

「주택법」 제56조제3항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기관명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‘담당공무원 확인 사항’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